

‘민간조사업 法案’ 國會서 본격 論議 전망

- 合法的 민간조사제 도입, 심부름센터 不法행위 근절 -

警友들에게 폭넓은 사회활동 기회될 듯

이상해 의원(한나라당, 경북 상주)이 지난 해 9월 의원 34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한 이래 간담회와 공청회까지 거쳤던 ‘민간조사업 법안’이 하반기 원구성 이 마무리 됨에 따라 조만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심부름센터의 규제와 자격 있는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도청, 청부폭력·살인 등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민간조사의 규제와 적절한 제도화를 통해 국민의 권리보호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우선, 경찰청장이 매년 일정한 응시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민간조사원 자격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에게 민간조사원 자격을 부여하고(안 제5조·6조), 자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 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민간조사원 필요의 최소한적 도입과 함께 현장경험 및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안 제8조).

〈응시자격 :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국가정보원, 군인 등 형사소송법상의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정보, 조사 및 수사업무의 경력이 통산하여 5년 이상인 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검정 및

연구경력이 통산하여 5년 이상인 자 ▲대학에서 형법학·범죄학·법과학·경찰학·범죄학·소방학 등의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관련분야의 연구경력이 통산하여 5년 이상인 자 등〉

아울러, 민간조사업의 업무범위는 ▲범죄·위법행위 조사 ▲분실·도난 재산의 소재 확인 ▲화재·사고·손실·명예훼손의 조사 ▲사망·상해 및 물건의 손상에 대한 조사 ▲소매가 불명한 친족의 소재 파악 등과 관련된 조사 ▲법원에서 사

용될 증거의 확보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개인정보의 조사로 규정해 민간조사원의 활동범위를 특정분야로 제약했고, 특히 사생활침해의 가능성이 제19조 특정한 조항에 포함되는 친족으로 그 범위를 극히 제한했다(안 제3조).

뿐만아니라, 민간조사업자라 하더라도 ▲국가안보·기밀에 관한 정보 ▲기업의 영업비밀·연구개발 정보 ▲사생활 침해정보 등에 대해서는 수집과 조사를 제한하도록 했다(안 제19조).

마지막으로, 민간조사업자의 업무수행 중 공무원의 직무집행 방해 금지(안 제20

조), 위법사항을 발견시 관할경찰서에 신고 의무(안 제22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 배상 의무(안 제27조),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제공 금지(안 제30조)등의 규정을 들으면서 수사기관에 대한 업무방해금지 및 의뢰인의 보호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이 법이 시행되면 현직시절 관련 분야에서 근무했던 警友들에게는 민간조사원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게 됨으로서 퇴직 이후에도 전문 직업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역대 치안총수 간담회

경찰청은 지난 7월 4일 역대 치안 총수들을 초청하여 치안상황을 설명하고 경찰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한 고견을 청취했다.

“수사구조개혁은 법치국가 원리 실현”

— 이 성 용 (독일 아루그스부르크대 법학박사)

철저한 대륙법계국가의 사법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독일의 형사소송법과 그 나라의 검경관계는 현재 우리나라의 수사구조를 그대로 존치시키려는 이들에게 있어 전가의 보도처럼 비교법적 논거로 사용되고 있다.

단순히 몇몇의 형사소송법 조문해석에만 집착해서 우리법의 모태가 되고 있는 독일처럼 우리도 현재의 검찰주도의 수사구조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 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일까. 과연 독일과 한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그렇게 쉽게 단순 비교할 수 있는 것인가.

알려진 바와 같이 독일의 검찰과 경찰은 주정부의 권한으로 16개 각 주에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조직화, 첨단화되는 각종 범죄에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범 국가적인 형사정책의 수립과 범죄정보의 공유와 협조, 체계적인 과학수사 기법개발이 필수불가결하다. 이러한 업무와 권한은 연방내무부 산하의 경찰기구인 연방수사국(Bundeskrimina-

를 위한 증거확보와 자백에 주력하게 되고, 이에 따라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준수법기관으로 수사의 법률적 통제라는 검찰 본연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률은 현실을 반영해야 하며 현존하는 법률체제가 현실과 배치되거나 문제점이 생길 경우 이를 개정하고 법의 이상과 현실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입법자의 의무이다. 우리나라는 독일의 형사법체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왜곡되고 조작된 학문적 편견으로 인해서 위에서 보는 것처럼 대륙법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정도로 집중된 권한을 검찰에게 부여하였고, 검찰은 이를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올바르게 행사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그 당사자가 검찰이건, 경찰이건, 강력한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는 민주주의와 법치국가 이념구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통 제되지 않는 권력이 부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다.

현재의 검찰독주 수사구조의 옹호자들 이어,, 혹은 독일 검경 당사자들을 만나서 질문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 보시게나.

“한국의 검사들은 수 천명에 이르는 자체 수사관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수사기관이나 외부의 도움없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 진행, 종결할 수 있으며, 독일과는 달리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자신의 이익이나 기타 비공익적인 목적에 따른 수사의 자의적 종결이 이루어 지더라도 법률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사인에 의한 직접기소가 불가능한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검사직상의 신분조서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내용의 진정을 부정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있다. 또한 중앙집권적인 조직으로서 중대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검사 개개인의 독립적인 수사의지가 실현되기 보다는 조직 상부의 정치적 의사가 반영될 여지가 있다. 또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범죄예방, 범 국가적 형사정책 수립과 집행 및 과학수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하거나 주도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통제되지 않는 이러한 검찰수사와 그 조직이 헌법상의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원리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가?”



박순덕 元老 女警友 會員 장학금 1억원 기탁

- 警友 자녀들에게 勉學의 길 열어주고 싶어 -



박순덕 회원이 구홍일 경우회장에게 기탁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박순덕 서울여경회 元老회원(84세)이 최근 구홍일 경우회장에게 장학금 1억원을 기탁하고 警友자녀들에게 면학의 꿈을 키워 주는데 사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 회원은 『평소 경우회와 경찰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던 터에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용단을 내리게 되었다』면서 『優秀한 경우자녀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6.25 동안중 남편과 이별하고 홀몸 獨身으로 살아 오며 평생 동안 근검절

약으로 살아 온 박 회원.

그녀는 현직시절부터 매사에 적극적이고 남다른 희생정신으로 일관해 왔다.

이를 대변하듯 박 회원은 지난 50년 12월 경찰에 투신한 이래 73년 6월 현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23년 동안 「미아 보호소, 유실물 찾아주기 센터」 등 對民 봉사활동 부서에서 주로 근무해 왔다.

『퇴직한지 33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경찰에 몸담아 봉사한 것을 지금도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는 그녀.

『청춘을 다 바쳤던 경찰이라는 삶의 터전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 자신이 존재할 수 있었다』고 회고하는 한편 『장학금 기탁이아발로 경찰로서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의 일부를 사회에 돌려줄 수 있는 뜻 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國民이 원하는 搜查權 調整, 왜 망설임니까?

- 1962년 신설된 헌법 제12조 3항에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이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재 경찰의 수사권 조정건의는 완전한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실화된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게 상호협력적인 檢·警 관계로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1. 日帝의 잔재인 검사의 독점적 수사구조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일본경찰은 이미 57년전(1948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전근대적인 상명하복의 檢·警 관계를 상호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고,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갖게 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검찰은 존경을, 경찰은 더 큰 신뢰를 받고 있다.

우리도 성숙된 민주사회의 여건에 맞게 인권보호를 위한 적절한 통제장치를 두고, 경찰과 검찰은 경쟁과 협력의 상호보완 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

2 수사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사분권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지구상에 수사권 없는 경찰은 한국뿐이며 오늘날 전세계의 형사소송질차는 기소의 주체와 수사의 주체로 분리되어 경찰과 검찰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추세에 있으나,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헌법에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수사권(개시·종결), 공소권, 형집행권 등을 독점한 막강한 검찰이 1차 수사기관화 하고 있으므로 檢·警간 수사권의 본배로 견제와 경쟁을 통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면 국민의 권익과 인권은 크게 신장될 것으로 확신한다.

3 더 이상 자질문제, 인권보호라는 구실로 경찰수사권 현실화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지난 20년간 4년제 경찰대학을 통한 세계 최고수준의 정예간부의 양성, 사법·행정고시 합격자 특채, 간부후보생 배출, 법학전공 수사요원 특채, 조사요원 간부화, 인권담당관 배치, 유급 자문변호사제 도입, 피해자 보호팀 운영 등의 자질향상과 인권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선진국 수준의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을 갖추었고 순경채용자의 75%가 대졸학력 이상 수준이 되었다. 따라서 해방이후 60년간 주장되어 온 경찰수사권의 시기상조론은 이제 그 명분을 잃었다.

4 수사분권 요구는 기관 이기주의적 바깥릇 다름이 아닙니다

범죄사건(연간 160여만건)의 97%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음에도 경찰은 법률상 수사주체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연간 사건관련자 150여만명이 경찰과 검찰에서 중복조사를 받음으로써 시간과 경제적 손실이 연간 수백억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국민의 불편해소와 사법서비스 편의증진을 위해 경찰의 독자수사권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